#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사례 중심으로)

삼성서울병원 법무실 박정상

#### "대졸이시죠?" 수술 환자에 직업·학력 대라는 병원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가족관계도 말씀하세요"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안 불감증 심각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대졸이시죠?"

직장인 김모(31·여)씨는 지난달 간단한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뜬금없는 질문을 받았다. 병원 관계 자는 복용 중인 약 및 병력이 있는지와 함께 직업, 학력, 부모 와 조부모 생존 여부, 형제관계 등에 대해 물었다.

김씨의 대답은 고스란히 환자 정보란에 입력됐다. 김씨는 "병원 관계자에게 왜 그런 내용이 필요한지 물으니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당황했다"면서 "병원에서 무슨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수 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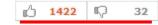
지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의사들의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 병력 등은 물론 신용카드번 호, 통장계좌번호, 개인영상정보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빌리지피플님** 대론댓글보기

직업 학력에 따라 아픈게 달라지는 것도 아닐텐데.... 쓸데없는 것 묻지말고 아픈사람 치료만 해라  $14.02.14 \mid \forall 2$ 

답글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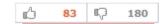




#### **캣츠님** 대로댓글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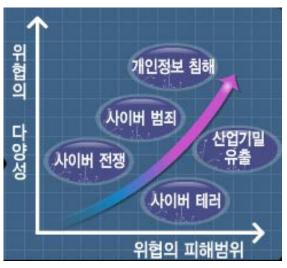
직업으로 인한 질병가능성 가족관계를 통해 자가간호능력과 유전질환 가능성 등을 위해 사전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학력에 따라서도 질병이나 수술에대한 이해도 교육방법의 선택 관리감독 방향 때문에 그러할 듯 14.02.14 | 신고

답글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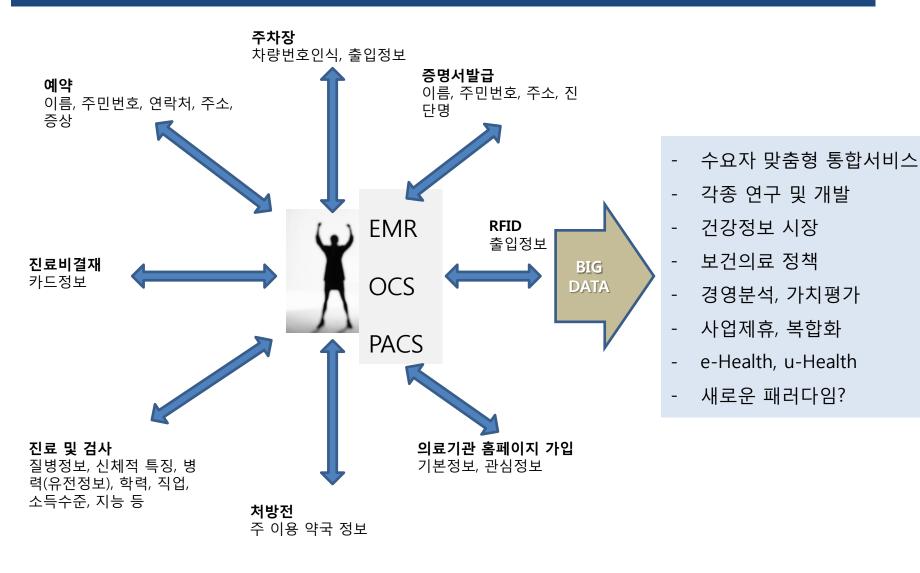
# 지식정보사회와 정보화 역기능





정보사회에 대한 신뢰 저하

### 의료에서의 개인정보 이용 가능성



### 개인의료정보 유출의 위험

의료정보, 그 중에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료정보는 환자의 질병 및 치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로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생산, 보관, 관리되고 있으며 정보특성상 가장 민감하고 보호가 필요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u>의료정보, 개인의료정보</u>는 환자 진료 및 치료, 처방, 관련연구, 법률적 자료(소송에 따른 증거자료) 제출, 의료비 청구 등 의료기관 내/외부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u>손실 혹은 파손이 발생하면 환자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고,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이나 정보유출은 윤리적인 문제 뿐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평판저하와 대중적 신뢰도 하락 등의 위험이 발생한다.</u>

정보화로 인해 디지털화된 개인의료정보가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로 집적·통합되어 보안위협이 커졌으며 인터넷 등 웹환경 확대에 따른 병원환경이 개방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위협요소가 더욱 더 증가하게 되었다. 더우기 e-Health, u-Health 등과 같은 IT 기술발전에 의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의료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폐해는 더욱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이유지, 200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대책, 보건사회연구원, 2013)

### 개인정보보호법

구 분	진료정보	일반 개인정보	
개념	O <b>진료를 목적으로 수집하여 처리</b> 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환자명부 등	O 홈페이지 회원정보, 홍보를 위한 연락처 등 일반 개인정보	
일반원칙	O 의료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의료법을 우선 적용 -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O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수집·이용	O <b>의료법 제22조</b> (시행규칙 제14조) - 동의 없이 수집 가능 - 진료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O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동의를 받아 수집	
관리	O 개인정보보호법 - 제26조: 문서로 위탁하여야 하며 위탁사실을 공개하여야 함 - 제29조: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보관, <u>물리정</u> 보호조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 제30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함 - 제31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제공·열람	O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에서 지정하는 경우*외에는 제공이나 열람할 수 없음 * 가족대리인 요청, 특별규정(열거주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정하는 경우*외에는 제공할 수 없음 * 다른 법률 근거시 제공 가능	
정정·삭제 등 요구사항 처리	O <b>의료법 제22조</b> - <u>법에따라</u> 수집하는 정보이므로 정정· 삭제 <u>할수</u> 없음	O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정 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에 응하여야 함	
보관 및 파기	O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법에서 정한 최소 보유기간 이상 보관 하여야 하며 진료목적상 필요시 연장 보관 가능	O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보유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	
이관	O 의료법 제40조 - 폐업이나 휴업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 이관 -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의료 기관 개설자가 계속 보관 가능 ※ 허가사항 변경시는 의료기관이 유지되는 것으로 봄	O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 의료기관 변경시 정보주체에게 이관사실을 알려야 함	
유출, 침해 대응	O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알리고 1만건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KISA, NIA)에 신고 O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 정보주체가 침해신고센터에 침해사실을 신고한 경우 조사에 협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O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대기실 등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시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 O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진료실, 수술실 등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운영하려면 정보주체의 동 의를 받아야 함		

√ (수집)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보유하므로 동의 없이 수집 가능
 √ (제공)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열람이나 제3자 제공할 수 없음
 √ (관리)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존·파기) 진료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10년이며 진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음
 √ (CCTV) 대기실 등에 CCTV 운영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여면 환자의 동의 필요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안전행정부, 2013. 12.) 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 기 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안전성 확보 쪼계	내용	
관리적 쪼치	▷ <b>내부관리계획</b> 의 수립시행	
기술적 쪼치	<ul> <li>접근 권한의 관리</li> <li>비밀번호 관리</li> <li>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li> <li>개인정보 암호와</li> <li>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li> <li>보안 프로그램(백신, 방화벽 등)의 설치 및 운영</li> </ul>	
물리적 쪼치	<ul><li>□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li><li>□ 잠금장치 설치</li></ul>	

### 진료기록 및 개인정보 유출

#### 환자 개인정보도 줄줄 샌다

의사가 병원 옮기며 가져가 … 민감한 진료기록 포함돼 충격 관리허술 틈타 해커까지 활개 성형전후 등 무방비 노출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입력시간: 2014.02.12 18:00:57



"○○성형외과 새해 맞이 특별 할인행사, 피부클리닉 20% 할인, 필러 29만원 균일가"

이현진(34·가명)씨는 얼마 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성형외과에서 할인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한번도 간 적이 없는 병원에서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고 광고문자를 보냈는지 궁금해진 이씨는 해당 병원에 전화해 확인한 결과 확당한 답변을 들었다. 2년 전 다녔던 성형외과 의사 중 한 명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의 정보를 새 병원으로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해당 병원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데 당사자 동의도 없이 <u>개인정보</u>를, 그것도 민감한 의료정보를 이리저리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 정보를 가져다 새 병원 홍보에 이용했다는 것도 불쾌하다"고 말했다.

병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워낙 허술하다 보니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돈을 요구하는 해커들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김모(37)씨 등 2명은 중국 해커들과 짜고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1만9,700여개의 성형 전·후 사진 등 정보를 빼돌려 공개하겠다며 5억원을 달라고 협박하다 <u>경찰</u>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피해 성형외과들의 <u>서버는 방화벽</u>을 비롯한 <u>보안</u>장치가 없어 <u>해킹</u>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 개인정보 보호법 (벌칙)

#### 【참고】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 내용	처벌 및 벌칙	
수 집 • 이 용	<u>민감정보</u> (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 <u>천</u> <u>만원</u>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 <u>천</u> <u>만원</u>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 <u>천만원</u>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u>수집시</u>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의무 위반(제22조)		
	탈의실·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u>개인정보와</u> 정보에 대한 <u>미동의를</u>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거부 (제16조, 제22조)	3 <u>천만원</u>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u>미제공</u> (제24조)		
	동의 획득 방법 위반(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공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 <u>천</u>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u>만원</u> 이하 벌금	
· 위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어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_ 탁 	업무위탁 시 문서로 위탁 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보호법 (벌칙)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개인정보 안전관리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u> 만원</u> 이하 벌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u>다른곳</u> 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 <u>천</u> <u>만원</u>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	 2년 이하 징역 또는	
	출·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1 <u>천만원</u>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 <u>천만원</u>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u>미지정</u> (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1	
정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 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 <u>천만원</u>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 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보	개인정보 유출사실 <u>미통지</u> (제34조)		
주 체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에 대한 부당한 제한・거절(제35조)	1	
ж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3 <u>천만원</u> 이하 과태료	
권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익 보 호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 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1 <u>천만원</u> 이하 과태료	
	관계물품·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외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인지?

● '살아있는 사람인 한 국적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주체가 될 수 있고,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1.12.행안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u>법 제24조제1항</u>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u>법 제18조제2한</u>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정보는 제외한다.

- 1. <u>「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u>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2. <u>「여권법」 제7조제1항</u>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 3. <u>「도로교통법」 제80조</u>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직원 PC 등 점검

PC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조치하고자 할 때, 그 PC를 사용하는 직원의 별도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컨트롤이 가능한지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 병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인 임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할 의무가 있음(법 제28조)
- ❖ 병원과 의사를 포함한 임직원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로 업무에 관한 지 휘감독 관계에 있고 임직원은 복부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법 제74조 양벌규정)
- ❖ 임직원에게 지급된 PC는 업무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사용자에게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권이 인정되는 점
- ❖ 업무용 pc에 직원의 개인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 개인용도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PC를 점검하고자할 때, 피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임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사례(1)

재판부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없이 기록을 송부한 것에 대한 의료법위반 고소사건

#### 문서송부촉탁내용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서울☆☆☆☆☆, 병명 : 슬관절부 통증에 대한 관련 질환, 치료기간 : 2001. 8. 3.부터 동년 8. 10.까지, 2002. 3. 4.부터 동년 3. 9.까지 각 내과에 입원 치료함)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본 및 CT, MRI 등의 필름 등의 사본 그리고 관련자료에 대한 사본 일체

#### 병원이 송부한 문서

위()기록외에 신경정신과, 신경과, 심장내과, 응급실,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가 포함된 기록 일체

1심 유죄 : 환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내용과 무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송부 인정

2심 무죄 : 괄호부분은 ○○○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문서송부촉탁의 본문은

"○○○ 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본..." 으로 볼 수 있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내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형법 제20조 정당방위)

3심 무죄 확정

※ 의료법(제21조 제②항 7호)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라 하여도 법원이 특정한 것 이상의 기록이 제출될 수 있는 점에 유의

#### 진료기록사본 발급 사례(2)

법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수선 수선자 참조

(경유)

제목 병역의부자 의무기록 조회

- 관련근거
- 가. 병역법 제11조의 2(자료의 제출요구 등) 및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 2.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3. 귀 병원에서 치료받은 명역의무자의 정병신체검사를 위하여 진료기록을 아래와 같이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사항



#### 강원지방병무청

수신 수신자 침조

(경유)

제목 병역의무자 의무기록 조회

- 1. 관련근거 : 병역범 제11조의 2(사료의 세출요구 등) 및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 병무행정 업무에 적극 혐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3. 귀 병원에서 치료받은 병역의우자의 징병신체검사를 위하여 진료기록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나 병역처문에 중요한 사항이 팀을 고려하시어 빠른 사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വ രജ്ചലം കംഗപ്രേക്കി

#### 의료법

제21조 제②항 10. 「병역법」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위 법조항을 근거로 의료 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하고 있으나 병무청 사무 위임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병무청장 이 요청해야 함

### 진료 참관 동의 여부

FAQ

병원에서 의학·지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실습을 위하여 진료행위 과정을 참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학·지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진료 과정을 참관하고자 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①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②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③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9조제2항). 이와 같이 의료행위 보조자로서의 의학 등 전공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법령이 인정하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동의 를 받지 않고도 참관 및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안전행정부, 2013. 12.) http://www.privacy.go.kr

※ 의대, 간호대 실습학생들의 EMR. PACS 등 진료기록 접근권한

#### 취업의료인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u>「의료법」 제2조</u>의 의료인에 한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미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미익의 내용

### 환자 사망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제공

연구목적의 환자 사망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조회를 요청할 때,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행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됨(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주민등록법에서는 '의료·연구 또는 통계목적의 달성'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동일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신청서식을 제출하여야 하고(주민등록법 제 29조 제1항, 제2항 제7호, 시행령 제47조 제4항 제2호,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지 제7, 8호 서식),
- 이 때 주민등록 등·초본의 자료에 한하여 전산자료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주민등록법 제30조 제1 ~ 3항, 시행령 제50조 제9항 제2호)

### 환자 동의 없는 사진게시 등....



사전 동의없이 수술전후를 비교한 사진을 웹사이트에 무 단으로 게재



- 얼굴이 명확히 나타난 사진은 개인정보
- 본인이나 지인외에 타인이 알아보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움
- 하지만 동의없는 사진게재는 '초상권', '사생활'침해의 가능성이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u>설치목적</u>

- 범죄예방 및 수사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공개된 장소 (복도, 계단, 주차장 등) 동의없이 설치가능 (안내문부착)

비공개 장소 (진료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등)

동의필요

불가

녹음기능

설치목적과 다른 목 적으로 임의조작